

팔 때는 안전하게! 살 때는 안심하고!

축산물 포장으로 '믿음'을 거래하세요.



**1** (02) 500-2102~3



# かんはるトユ~ でトスナるトンリ~!

2011년부터 닭·오리 고기, 계란의 포장 유통 의무화







# 소비자들이 '믿고 찾을 수 있는' 닭·오리 고기, 계란 청결하고 위생적인 포장 유통에서 시작됩니다!

### **(ii)** 포장, 왜 필요할까요?

닭·오리 고기, 계란을 포장하지 않고 유통하면, 미생물이나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원산지나 신선도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「포장 의무화」는 오염 요인을 차단하고, 유통기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
## **(1)** 안전한 먹을거리로 '판매'도 '구매'도 쑥쑥!

「포장 의무화」는 안전한 먹을거리에 민감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.



# 2011년부터는 닭·오리 고기와 계란은 의무적으로 포장 유통하여야 합니다!

# (f) '닭·오리 고기'는 2011년 1월부터!

그동안 하루 5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닭·오리 고기 도축업자에게만 포장 유통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 1월부터는 닭·오리 고기 도축업 영업자 전체, 닭·오리 고기를 보관, 운반, 판매하는 <mark>영업자 모두가 포장 유통</mark>을 하여야 합니다. 이에 따라 전통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·오리 고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
※ 다만, 소비자가 소매단위로 포장된 닭고기나 오리 고기를 구매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를 위해 영업자(판매자)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, 영업자가 위생적으로 절단해줄 수 있습니다.

# (i) '계란'은 2011년 4월부터!

2011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한 계란만을 유통,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계란을 포장 유통, 판매하기위해 「식용란 수집판매업」 영업 제도가 새로이 도입 시행됩니다.

# (i) 위반 시 100~300만원 과태료 부과

닭·오리 고기 및 계란을 포장하지 않고 생산·유통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